

2023년 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 일시	2023년 01월 06일 10:30	
회의 장소	사)화성시장장애인부모회 교육실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사업계획서 보고함 ○ 2023년 예산계획 보고함 	
협의사항	사용자측 안전제시 / 협의내용	
	(1) 2023년 바우처단가의 확정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단가	(1) 임금단가 확정(평일 12,100원/ 공휴일 17,520원)에 협의함. (바우처단가의 75%이상 지급하기로 함, 연차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2) 2023년 활동지원사 정신보건법 건강진단서 검진비용 1인당 20,000원 책정	(2) 활동지원사의 정신보건법 건강진단서 검진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함, 2022년 15,0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은 20,000원을 지원하기로 함.원광종합병원에서 진행 예정임.
	(3)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급.	(3) 장기근속자 우대에 따라 활동지원사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의 근속연수에 따라 11월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함.
	근로자측 안전제시 / 협의내용	
(1) 명절선물 지급 관련	(1) 명절선물을 물품 지급이 아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수령하기 원함, 물품은 받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수 있고 수령하기 위해 직접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음에 대해 토론함, 올해는 물품을 이미 구입하였기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추후 기관사정에 따라 숙고하기로 함.	
(2) 휴게시간 준수에 따른 불편함	(2) 휴게시간의 준수가 활동지원사에게는 봉사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설수 없는 여건임에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단말기를 종료해야하는 실정에 불만이 많음을 서로 공감함.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위반시 기관의 큰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에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하는 실정에 대해서 서로 공감함. 계속적으로 정부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함.	
(3)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진행 관련	(3) 사회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활동지원사의 차량이용을 지양하고 있어 기관에서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임.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의 차량이용이 필요함에도 활동지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한 처우임을 서로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p>의결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활동지원사업의 수익금 활용계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함 ○ 활동지원사의 장기근속자 수당으로 사용하기로 함 ○ 활동지원사의 포상이나 수당 지급 등 사용하기로 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의 명절 선물비 등 사용하기로 함 ○ 이용자등 장애인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로 함 ○ 전담인력의 인건비, 일용잡금,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 운영비, 회의비, 여비, 사무실 집기 비품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하기로 함
<p>기타토의 사항</p>	<p>가.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무교육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나. 연말정산 자료 제출 :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기로 함.</p>
<p>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항의 이행 상황</p>